|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 확정방법**세관총서 령 (2013) 213호《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 확정방법》은 2013년 12월 9일 세관총서 서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된바, 이에 공포하여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서서장　2013년 12월 25일**제1장 총 칙****제1조** 수출입화물 과세가격을 정확히 심사확정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이라 칭함),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제2조** 세관에서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확정은 객관, 공평, 통일의 원칙을 따른다.**제3조** 세관에서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확정은 본 방법을 준용한다.내수판매 보세화물 과세가격의 확정, 수입을 허용하는 여객의 수하물, 개인우편물품 및기타 개인용물품의 과세가격의 확정, 밀수용의가 있는 수출입화물, 물품의 과세가격의 확정은 본 방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제4조** 세관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제공한 상업비밀 자료를 타당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대외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납세의무자는 세관에 서면으로 상업비밀 유지요구를 제출할 수 있고, 비밀내용을 명기할수 있다. 단 세관은 상업비밀사유로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제2장 수입화물 과세가격****제1절 수입화물 과세가격 확정방법****제5조** 수입화물 과세가격은 세관이 해당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심사확정하고 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수입지 도착부터, 하역 전 시점까지의 운송 및 관련 비용, 보험료를 포함해야 한다.**제6조** 수입화물 거래가격이 본장 제2절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세관은 관련상황 알아보고 납세의무자와 가격을 상의한 후 하기 방법 순으로 해당 활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1) 동일화물의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밥법(2) 유사화물의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방법(3) 역 공제가격에 의한 평가방법(4) 계산가격에 의한 평가방법(5) 합리적 방법납세의무자는 세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 후 전관의 제(3)항과 제(4)항의 방법의 순서를 바꾸어 신청할 수 있다.**제2절 거래가격의 평가방법****제7조** 수입화물 거래가격이라 함은 판매측이 중화인민공화 경내에서 해당 화물을 판매 할 경우 매입측이 해당 화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지불한 또는 지불하여야 하는 대금을 본 장 제3절 규정에 따라 조정한 후의 대금총액으로서 직접 지불한 대금과 간접 지불한 대금을 포함한다.**제8조** 수입화물 거래가격은 하기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1)매입측의 처분 또는 사용하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서 실시한다고 규정한 제한, 화물판매지역에 대한 제한 및 화물가격에 대해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는 제한은 예외이다.(2) 수입화물가격이 해당 화물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조건이나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3) 판매측은 매입측이 수입화물을 판매, 처리 또는 사용하여 발생한 어떠한 수익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익이 있다 하여도 본 방법 제11조 제1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4) 매매쌍방간에 특별한 관계가 없거나 특별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본 방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제9조** 하기의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매입측의 수입화물 처리 또는 사용을 제한 한 것으로 간주한다.(1) 수입화물을 전시 또는 무료증여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2) 수입화물을 지정된 제3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경우.(3) 수입화물을 완제품으로 가공한 후 판매측 또는 제3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경우.(4) 세관의 조사를 거쳐 매입측이 수입화물 처리 또는 사용상 제한을 받는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제10조** 하기의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수입화물의 가격이 해당 화물 거래가격을 확정하지 못한 조건 또는 요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간주한다.(1) 매입측이 판매측으로부터 일정량의 기타화물을 구매하는 조건에서 수입화물의 가격이 확정된 상황.(2) 매입측이 판매측에게 기타화물을 판매하는 조건에서 수입화물의 가격이 확정된 상황.(3) 세관의 조사를 거쳐 화물의 가격이 화물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요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 기타 상황.**제3절 거래가격의 조정종목****제11조** 거래가격을 기초로하여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확정 할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해 지급 또는 지급하여야 할 대금에 포함되지 않은 하기의 비용 또는 가치는 과세가격에 계상하여야 한다.(1) 매입측에서 부담하는 하기 비용:1. 화물 매입 수속비 이외의 수속비와 중개비용2. 해당 화물과 동일체로 간주되는 용기비용3. 표장재 비용과 포장 노무비용(2) 수입화물의 생산과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판매와 관련하여 매입측에서 무료 또는 원가가격 이하의 방식으로 제공하여, 적당한 비율로 하기 화물 또는 서비스의 가치를 분담할 수 있는 상황1. 수입화물에 포함한 자재, 부품, 부속품 및 유사한 화물.2. 수입화물 생산과정에 사용한 도구, 금형 및 유사한 화물.3. 수입화물 생산과정에 소모한 자재4. 경외에서 진행한 수입화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공사설계, 기술연구개발, 프로세스 및 설계제도 등 관련 서비스(3) 매입측은 판매측 또는 관련 측에 특별 허가권 사용비를 직접이거나 간접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단 하기에 상황 중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를 예외한다.1. 특별 허가권 사용료가 해당 화물과 무관한 상황.2. 특별 허가권 사용료 지불이 해당 화물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판매하는 조건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4) 판매측이 해당 화물을 매입측으로부터 수입 후 판매, 처리 또는 사용 소득에서 직접이나 간접으로 취득한 수익.납세의무자는 본 조에서 서술한 비용 또는 가격의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데이터자료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제공하지 못할 경우 세관이 납세의무자와 협의를 거친 후 이 방법 제6조에서 나열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제12조** 본 방법 제11조 제1관 제(2)항에 근거하여 수입화물 과세가격의 화물가치를 확정하고 계상하는 경우, 하기의 방법에 따라 관련 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1) 매입측이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계상 할 가치는 매입가격이다.(2) 매입측이 자체 생산하였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제3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계상 할 가치는 생산원가이다.(3) 매입측이 임차하여 취득하는 경우 계상할 가치는 매입 측이 부담한 임대료원가이다. (4) 수입화물 생산과정에 사용한 도구, 금형 및 유사화물의 가치는 그 공사설계, 기술 연구개발, 프로세스 및 설계제도 등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화물을 판매측에 인도하기 전 이미 매입 측에서 사용하였다면, 계상가격은 국내공인 회계원칙에 따라 감가 상각한 후의 가치이다.**제13조** 하기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 특별 허가권 사용료는 수입화물과 관련한 것으로 간주한다.(1) 특별 허가권 사용료를 특허권 또는 독점기술 사용권 사용료에 지급하고 수입화물이 하기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1. 특허권 또는 독점기술을 함유하는 경우2. 특허방법 또는 독점기술로 생산하는 경우. 3. 특허 또는 독점기술을 실시하기 위해 전문설계 또는 제조한 경우.(2) 특별 허가권 사용료는 상표권에 지불하고 하기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1. 상표를 부착한 상황2. 수입 후 상표를 부착하여 직접 판매가 가능한 상황3. 수입 할 때 이미 상표권이 있으며 간단한 가공을 거친 후 상표를 부착하여 즉시 판매가 가능한 상황.(3) 특별 허가권 사용료를 저작권에 지불하고 수입화물이 하기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1. 소프트웨어, 문자, 악곡, 도면, 영상 또는 기타 유사한 수입화물로서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광 디스크 또는 기타 유사한 매체의 형태인 상황 2. 기타 저작권내용을 향유하는 수입화물인 상황. (4) 특별 허가권 사용료를 판매 대리권, 소매권 또는 기타 유사한 권리에 지불하고 수입화물이 하기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1. 수입후 직접 판매가 가능한 상황 2. 간단한 가공을 거쳐 즉시 판매할 수 있는 상황. **제14조** 매입 측이 특별 허가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매입할 수 없는 수입화물 또는 매입 측이 특별 허가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한 대상화물의 계약 약정조건으로 거래될 수 없는 경우, 특별 허가권 사용료 지불이 수입화물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을 구성한다고 간주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입화물 대금 중 별도로 명기된 하기 세금, 비용은 화물 과세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1) 공장건물, 기계나 설비 등으로서 화물수입 후에 발생한 건설, 설치, 조립, 수선 또는 기술지원비용. 단, 유지비용은 예외이다. (2) 수입화물이 중화인민공화국경내 수입지에 도착한 후부터 하역 후 발생한 운수 및 기타 관련 비용과 보험료. (3) 수입관세, 수입단계에 세관이 대리 징수하는 조세 및 기타 국내조세 (4) 경내에서 수입화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지불한 비용 (5) 경내 외 기술 강습 및 경외고찰 비용. 이와 동시에 하기 조건에 부합하는 이자비용은 과세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1) 매입측이 수입화물 매입을 위해 융자를 받아 발생한 이자인 경우 (2) 서면 융자합의서가 있는 경우 (3) 이자비용을 단독 명기한 경우 (4) 납세자의무자가 관련 이자율이 융자받을 당시 당지 동류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이자율수준보다 높지 않고,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수입화물의 가격과 당해 수입화물의 실지 지불한 또는 지불하여야 할 가격이 매우 근사한 융자를 마련한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상황. **제4절 특수 관계****제16조**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거래 양측에 특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1) 거래 양측이 일가족 구성원인 상황 (2) 거래 양측이 상업상 상호 고급임원이거나 이사장인 경우 (3) 한 측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대 측의 지배를 받는 경우 (4) 거래 양측이 모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3자의 지배를 받는 경우 (5) 거래 양측이 공동으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일방이 상대방의 공개 발행한, 표결권이 있는 증권이나 지분의 5%이상(5% 포함)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소유, 지배 또는 향유하는 경우 (7) 일방이 상대방의 고용자, 고급임원 또는 이사인 경우 (8) 거래 양측이 동일 합명구성원인 경우. 거래 양측이 경영상 상호 연관되고 한 측이 상대 측의 독점대리, 독점판매 또는 독점 양수인으로서 전관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에도 특수 관계가 존재한다고 간주하여야 한다. **제17조** 거래 양측에 특수 관계가 존재하지만 납세의무자가 거래가격이 동일시점 또는 거의 동일시점에 발생한 하기 임의의 관의 가격과 접근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특수 관계가 수입화물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간주하여야 한다. (1) 경내의 특수 관계가 없는 매입측에게 판매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입화물의 거래가격 (2) 본 방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확정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입화물의 거래가격 (3) 본 방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확정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입화물의 거래가격. 세관이 상기 가격을 비교하는 경우 상업수준과 수입물량의 차이 및 거래 양측의 특수 관계가 조성한 비용의 차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제18조** 세관에서 화물판매와 관련한 상황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일반 상업관례에 부합되면 특수관계가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확정한다.**제5조 거래가격 평가방법 이외의 기타** **평가방법****제19조** 동일화물의 거래가격 평가방법이라 함은 세관이 수입화물과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판매한 동일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평가하는 방법을 지칭한다. **제20조** 유사화물 거래가격 평가방법이라 함은 세관이 수입화물과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판매한 유사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평가하는 방법을 지칭한다. **제21조** 동일 또는 유사 화물 거래가격 평가방법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대상화물과 상업수준이 같고 수입물량이 기본적으로 일치한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을 이용하여야 한다. 상기 가격을 이용하는 경우 대상화물과 동일 또는 유사화물 간의 운수거리와 운수방법의 차이로 인한 원가 및 기타 발생 비용의 차이를 조정한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데이터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전관에서 서술한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업수준이 다르고 수입물량이 다른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을 이용할 수 있다. 상기 가격을 이용하는 경우, 상업수준, 수입물량, 운수거리, 운수방법의 차이로 인한 가격, 원가 및 기타 면의 차이를 조정한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데이터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22조** 동일 또는 유사화물 거래가격 평가방법에 따라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는 경우 우선 동일 생상업체가 생산한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을 이용하여야 한다. 동일 생산업체가 생산한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동일 생산국가나 지역의 기타 생산업체가 생산한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거래가격을 이용할 수 있다. 여러개의 동일 또는 유사화물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역 공제 평가방법이라 함은 세관이 수입화물, 동일 또는 유사 수입화물의 경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경내에서 발생한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는 방법을 지칭한다. 당해 판매가격은 동시에 하기 조건들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대상화물 수입과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수입한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경내 판매가격 (2) 화물 수입 시 상태로 판매되는 가격 (3) 경내 첫 판매 단계에서 판매되는 가격 (4) 경내의 특수 관계가 없는 측에 판매되는 가격 (5) 당해 가격에 따라 판매되는 화물의 합계물량이 각종 많은 가격. **제24조** 역 공제 가격 평가방법에 따라 수입화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는 경우 하기 각 항을 공제하여야 한다. (1) 동급 또는 동류 화물이 경내 첫 판매단계에서 판매될 때의 통상적 이윤과 일반 비용(직접비용과 간접비용) 및 통상적으로 지불되는 수수료 (2) 화물을 경내 수입지까지 운송하여 하역할 때까지의 운임과 기타 관련 비용, 보험료 (3) 수입관세, 수입단계에 세관이 대리 징수하는 기타 국내 세금. 대상화물, 동일 또는 유사화물이 경내에서 수입 할 때의 상태로 판매되지 않을 경우 의무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본 방법 제 23조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조건 상황에서 한층 가공 후 판매되는 화물 판매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여야 한다. 단, 가공 부가가치 액을 동시에 공제하여야 한다. 전관에서 부가가치액은 가공원가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데이터자료, 해당 업계에서 공인하는 기준, 계산방법 및 기타 업종관례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본 조 규정에 따라 공제할 항목을 확정할 경우 국내에서 공인하는 회계원칙과 일치한 원칙과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산가격 평가방법이라 함은 하기 각 항의 합계을 기초로 수입화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는 평가방법을 지칭한다. (1) 대상화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한 자재의 원가와 가공비 (2) 경내에 판매하는 동급 또는 동류 화물의 통상적 이윤과 일반비용(직접비용과 간접비용) (3) 대상화물을 경내 수입 지까지 운송하여 하역하기 전까지의 운임 및 관련 비용, 보험료. 전관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는 경우, 세관은 경외 생산업체의 동의를 받고 사전에 관련 국가나 지역 정부에 통지한 후 경외에서 당해 기업이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조 제1관 규정에 따라 관련 가치나 비용을 확정하는 경우, 생산 국가 또는 지역에서 승인하는 원칙과 일치한 원칙과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26조** 합리적 방법이라 함은 세관이 거래가격 평가방법, 동일화물 거래가격 평가방법, 유사화물 거래가격 평가방법, 역 공제 가격 평가방법, 계산가격 평가방법으로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 세관이 본 방법 제2조 가 규정한 원칙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데이터자료를 기초로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는 것을 지칭한다. **제27조** 세관이 합리적 방법으로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확정하는 경우 하기 가격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내 생산화물의 경내 판매가격 (2) 선택가능 가격 중의 비교적 높은 가격 (3) 화물 수출 지 시장에서의 판매가격 (4) 본 방법 제25조 규정 이외의 가치 또는 비용으로 계산한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가격(5) 제3국 또는 지역에 수출하는 화물의 판매가격 (6) 최저 제한가격 또는 무단가격, 픽션가격. **제3장 특수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제28조** 경외에 반출하여 수리하는 기계 기구, 운수도구 또는 기타 화물은 반출 시에 이미 세관에 명확히 신고하였고 세관 규정기간 내에 반입한 경우 경외의 수리비용과 자재, 부품 비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반출한 화물을 세관 규정기간을 경과하여 반입한 경우 세관이 본 방법 제2장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제29조** 경외에 반출하여 가공하는 화물은 반출 시에 이미 세관에 명확히 신고하였고, 세관 규정기간 내에 반입하였다면 경외의 가공비용과 자재, 부품비용 및 당해 화물 반입 시에 발생한 운임 및 기타 관련 비용, 보험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경외에 반출하여 가공하는 화물을 세관 규정기간을 경과하여 반입한 경우, 세관이 이 방법 제2장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제30조** 세관의 비준을 받고 임시 입국하는 화물로서 과세하여야 하는 경우, 세관은 본 방법 제2장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세관의 비준을 받고 유보구입을 위해 임시 입국한 화물은 세관이 심사 확정한 유보구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제31조** 임대방식으로 수입한 화물은 하기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1) 임대료방식으로 대외에 지불한 임대화물은 임대차기간에 세관이 심사 확정한 임대료를 과세가격으로 하며 이자를 계상하여야 한다. (2) 유보 구입한 임대화물은 세관이 심사 확정한 유보구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3) 납세자가 세금 1회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본 방법 제6조에 나열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확정하거나 세관이 심사 확정한 임대료 총액을 과세가격으로 할 것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 감, 면세 수입화물로서 세금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세관이 심사 확정한, 해당 화물 기존 수입 할 때 가격에서 감가상각 가치를 공제하여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그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과세가격 = 세관에서 심사 확정한 해당 화물의 수입할 때 가격×(1- 보완시 실지수입일자 경과기간(월)/감독관리 연한×12)상기 공식에서 ‘보완 시 실지 수입일자 경과기간’은 월별 계산하며,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3조** 구상무역, 위탁판매, 기증, 증여 등 수입가격이 없는 수입화물은 세관이 납세의무자와 협상하여 본 방법 제6조에 나열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제34조** 전문 데이터처리설비용 소프트웨어를 적재한 매체를 수입하고,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매체 자체의 가치 또는 원가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여야 한다. (1) 매체의 가치 또는 원가와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따로 명시한 상황 (2) 매체의 가치 또는 원가와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납세의무자가 매체의 가치 또는 원가 증명서류를 제공하거나 소프트웨어의 가치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 미술, 촬영, 음성, 영상, 비디오, 게임, 전자출판물을 함유한 매체는 전관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수입화물 과세가격 중 운수 및 기타 관련비용, 보험료의 계산****제35조** 수입화물의 운수 및 관련비용은 매입측의 실제 지불 또는 지불해야 할 비용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운수 및 관련비용을 확정할 수 없을 때 화물수입 동시기 정상적인 운수원가에 따라 심사 확정하여야 한다.운수도구가 수입화물이고 스스로의 힘을 이용하여 경내에 진입하는 경우 해관에서 별도로 운수 및 관련비용을 계상하지 않고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제36조** 수입화물의 보험료는 실지 지불한 비용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만일 수입화물의 보험료를 확정할 수 없거나 실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세관이 화물가격 플러스 운수총액,의 3‰로 보험료를 계산하여야 한다. 그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보험료=(화물가격+운임)×3‰**제37조** 우편으로 수입한 화물은 우편료를 운수 및 관련 비용, 보험료로 하여야 한다. **제5장 수출화물의 과세가격****제38조** 수출화물의 과세가격은 세관이 대상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심사 확정하고 화물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수출지에 운반하여 적재하기 전까지의 운수 및 관련 비용, 보험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9조** 수출화물의 거래가격이라 함은 대상화물 수출 판매 시 판매측이 대상화물을 수출하면서 매입측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취하여야 할 대금의 총액을 지칭한다. **제40조** 하기 세금와 비용은 수출화물 과세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1) 수출관세 (2) 화물대금 중 별도로 명시한, 화물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수출지까지 운수하여 적재한 후의 운수 및 관련 비용, 보험료 **제41조** 수출화물의 거래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세관이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납세의무자와 가격을 협의한 다음 하기 순으로 대상화물의 거래가격을 심사 확정하여야 한다. (1) 동시기 또는 거의 동시기에 동일 국가나 지역에 수출한 동일화물의 거래가격 (2) 동시기 또는 거의 동시기에 동일 국가나 지역에 수출한 유사화물의 거래가격 (3) 경내에서 생산하는 동일 또는 유사화물의 원가, 이윤과 일반비용(직접비용과 간접비용), 경내에서 발생하는 운수 및 관련 비용, 보험료에 근거하여 계산한 가격 (4) 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한 가격. **제6장 과세가격 심사 확정****제42조** 납세의무자는 세관신고 시에 본 방법 관련규정에 따라 세관에 전표, 계약서, 적하증권, 포장명세서 등 증빙을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또한 세관 요구에 따라 화물거래 관련 지불증빙 및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상업증빙, 서면자료, 전자데이터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화물거래 중 본 방법 제2장 제3절에 나열한 가격조정 항목 또는 본 방법 제35조에 나열한 운수 및 관련비용이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전관에서 서술한 가격조정 항목 또는 운수 및 관련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객관적 계량기준으로 분담하고 증명자료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3조** 세관은 신고한 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심사 확인하기 위하여 하기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화물 수출입 관련 계약서, 전표, 장부, 외환 결제증빙, 증거서류, 업무 서한과 전문, 녹음 녹화제품 및 기타 거래쌍방의 거래활동 관련 상업증빙, 서면자료, 전자데이터를 사열하고 복제한다. (2) 수출입화물 납세의무자 및 그와 자금거래 또는 기타 업무거래가 있는 공민, 법인이나 기타 조직을 대상으로 수출입화물 가격 관련문제를 조사한다. (3) 수출입화물을 검사하거나 화물샘플을 취하여 검사 또는 화학분석을 진행한다. (4) 납세의무자의 생산경영장소, 화물보관장소에 진입하여 수출입활동 관련화물과 생산경영 상황을 조사한다. (5) 직속세관 관장이나 그가 수권한 산하세관 관장의 비준 하에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구좌조회 통지서》(별첨1 참조)와 세관직원 증명서를 지참하고 납세의무자가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개설한 단위 구좌의 자금 거래상황을 조회하고 은행 감독관리기구에 관련 상황을 통보할 수 있다. (6) 세무부문을 통하여 수출입화물 국내 조세 납부상황을 조회, 파악한다. 세관이 전관이 규정한 각항의 직권을 행사할 경우, 납세의무자 및 관련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관련 서면자료와 전자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하며 거부, 지연,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세관이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의혹을 가지거나 또는 거래양측 간의 특수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격 질의통지서》(《가격 질의통지서》라 칭함, 별첨2 참조)를 작성하여 질의 이유를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고지하고 납세의무자나 그 대리인은 《가격 질의통지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5업무일 내에 서면으로 관련 자료나 기타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증명하거나 양측 간의 특수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전관의 자료를 규정기간 내에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규정기간 만료 전에 서면으로 세관에 기간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특수 사정을 제외하고 10업무일 이상 연기하지 못한다.  **제45조** 세관이 《가격 질의통지서》를 제정한 후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세관이 납세의무자와 가격협의를 한 후 본 방법 제6조 또는 제41조에 나열한 방법에 따라 수출입화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1) 납세의무자나 그 대리인이 세관이 규정한 기간 내에 더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아니한 상황 (2) 납세의무자나 그 대리인이 자료, 증거를 제공하고 세관이 제공된 자료, 증거를 심사 확인한 후에로 여전히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의심할 이유가 있는 상황 (3) 납세의무자나 그 대리인이 자료, 증거를 제공하고 세관이 제공한 자료, 증거를 심사 확인한 후에 여전히 거래 양측의 특수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황. **제46조** 세관이 조사에서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가격질의를 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와 가격협상을 한 후 본 방법 제6조에 나열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할 수 있다. 세관이 조사에서 수출화물의 거래가격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가격질의를 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와 가격협상을 한 후 본 방법 제41조에 나열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할 수 있다. **제47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가격협상 할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에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격상의 통지서》(별첨 3참조). 납세의무자는 통지를 입수한 날부터 5 업무일 내에 세관과 가격협상를 진행한다. 세관이 본 방법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가격협상을 진행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격상의 기록서》(별첨4 참조)를 작성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규정기간 내에 세관과 가격협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은 가격협상 권리포기로 간주하고, 직접 본 방법 제6조 또는 제45조에 나열한 방법에 따라 수출입화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할 수 있다.**제48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할 경우, 세관은 납세의무자의 서면신청에 의하여 가격질의 및 가격협상을 하지 아니하고 본 방법 제6조 또는 제41조에 나열한 방법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할 수 있다. (1) 동일 계약 하에서 분할 수출입하는 화물로서 세관이 그 중 1개의 화물가격을 평가한 상황 (2)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이RMB 10만위안 미만 또는 관세 및 수출입단계에 세관이 대리 징수하는 과세 총액이 RMB 2만위안 미만인 상황 (3) 수출입화물이 위험물, 신선한 물품, 부패물, 쉽게 실효하는 물품, 패기 물품. 중고품인 상황. **제49조** 세관이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는 기간에 납세의무자는 법에 따라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먼저 화물을 인출할 수 있다. **제50조** 세관이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 후 납세의무자는 서면신청을 제출하여 세관에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 확정에 대한 서면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세관은 요구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격평가 고지서》(별첨5 참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장 부  칙****제51조** 이 방법 하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경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세관 관경내를 지칭한다. ‘과세가격’이라 함은 세관이 관세징수 시에 사용하는 가격을 지칭한다. ‘매입측’이라 함은 대금지불의무를 이행하고 화물을 구매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고 수익을 향유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체를 지칭한다. 그 중 수입화물의 매입측은 화물을 구매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내로 수입하는 매입측을 지칭한다. ‘판매측’이라 함은 화물을 판매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체를 지칭한다. 그 중 수입화물의 판매측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수입화물을 판매하는 판매측을 지칭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로의 매출’은 수입화물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로 반입함으로써 판매측이 화물의 소유권과 위험을 매입측에 이전하고 매입측은 이를 위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실지 지불한, 지불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매입측이 수입화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한 대금의 총액, 즉 판매측이 수입화물을 매출하는 조건으로서 매입측이 판매측이나 판매측의 의무를 이행하는 제3자에게 이미 지불한 그리고 앞으로 지불하여야 할 전부의 대금을 지칭한다. ‘간접 지불’이라 함은 매입측이 판매측의 요구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불하거나 거래 양측의 기타 자금거래를 상계하는 지불방식을 지칭한다. ‘화물구매 수수료’라 함은 매입측이 수입화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기의 구입대리인에게 지불한 노무비용을 지칭한다. ‘중개비용’이라 함은 매입측이 수입화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거래 양측의 이익을 대표한 브로커에게 지불한 비용을 지칭한다. ‘동일화물’이라 함은 수입화물과 동일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한, 물리적 성질, 품질, 명성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화물을 지칭한다. 단, 외관상의 미세한 차이는 무시한다. ‘유사화물’이라 함은 수입화물의 동일 국가나 지역에서 생산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특징이 유사하고, 구성자재가 유사하고, 기능이 동일하며 상업상 상호 대체할 수 있는 화물을 지칭한다. ‘거의 동시기’라 함은 세관이 통관신고를 접수한 대체로 동시기로부터 최대한 전후 45일을 초과하면 안 되는 시기를 지칭한다. 가격 역 공제방법으로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하는 경우에 만일 수입화물, 동일화물이나 유사화물이 세관이 수입통관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전후 45일 내에 경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경우, 경내에서 판매되는 기간을 통관신고 접수 일로부터 전후로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인하는 회계원칙’이라 함은 관련 국가나 지역 회계 채산 업무에서 널리 준용되는 원칙적 규범과 회계 채산 업무 처리방법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화물가치 인정 회계 발생주의원칙, 배비원칙, 역사적 원가원칙, 구획 수익성과 자본성 지출원칙 등을 지칭한다. ‘특별 허가권 사용료’라 함은 수입화물의 매입측이 지적재산권 권리인 및 유효 수권인의 특허권, 상표권, 독점기술, 저작권, 2단계 도매권이나 판매권을 양수하고 지불한 비용을 지칭한다. ‘기술 강습비용’이라 함은 판매측 또는 매출측과 관련한 제3자가 매입측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수입화물 관련 기술 지도를 하고 수입화물 매입측이 지불한 수업교원의 수업, 숙식, 교통, 의료보험 등 기타 비용을 지칭한다. ‘소프트웨’라 함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조례》가 규정한, 데이터 처리설비의 프로그램과 파일을 지칭한다. ‘독점기술’이라 함은 설계도, 금형, 기술 자료와 규범 등 형태로 구현된, 미공개 프로세스, 처방, 제품설계, 품질 컨트롤, 검정, 운영관리 면의 지식, 경험, 방법, 비결을 지칭한다. ‘간단한 가공’이라 함은 희석, 혼합, 분류, 간단한 조립, 재포장 및 기타 유사한 가공을 지칭한다. ‘동급 또는 동류 화물’이라 함은 특정 산업이나 산업부문이 생산한 1세트나 1계열의 화물 중에 포함된 동일화물이나 유사화물을 지칭한다. ‘매체’라 함은 자기테이프, 디스크, 시디를 지칭한다. ‘가격확인’이라 함은 세관이 수출입화물 과세가격을 확정하기 위해 법에 따라 본 방법 제43조가 규정한 직권을 행사하여 증빙검사, 데이터 확인, 실물과 관련 장부 대조 등 방법을 통하여, 수출입화물 통관신고 거래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 및 거래가격이 거래 양측 간 특수 관계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지칭한다. ‘가격협상’라 함은 세관이 거래가격 이외의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상업비밀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납세의무자와 상호 파악하고 있는, 과세가격 확정 관련 데이터자료 교환을 지칭한다. 하역전이라 함은 화물에 대해 하역행위를 시작하기 전을 지칭한다.적재전이라 함은 화물에 대해 적재행위를 시작하기 전을 지칭한다.**제52조** 납세의무자가 세관의 과세가격 평가방법에 이의를 가지는 경우, 세관이 정한 관련 행정결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법에 따라 직 상급 세관에 재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하여 밀수 및 세관 감독관리 규정위반 행위 또는 기타 《세관법》위반 행위를 구성한 경우, 세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 실시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4조** 본 방법의 해석은 세관총서가 책임진다. **제55조** 본 방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3월 28일 세관총서 령 제148호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 확정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海关****审定进出口货物完税价格办法**海关总署令﹝2013﹞213号《中华人民共和国海关审定进出口货物完税价格办法》已于2013年12月9日经海关总署署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4年2月1日起施行。 　　　　　　　　　　　　　　　　　　　　　　　　　　　　　　　　　　　 署 长　　　　　　　　2013年12月25日**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正确审查确定进出口货物的完税价格，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以下简称《海关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海关审查确定进出口货物的完税价格，应当遵循客观、公平、统一的原则。　　**第三条** 海关审查确定进出口货物的完税价格，适用本办法。内销保税货物完税价格的确定，准许进口的进境旅客行李物品、个人邮递物品以及其他个人自用物品的完税价格的确定，涉嫌走私的进出口货物、物品的计税价格的核定，不适用本办法。　　**第四条** 海关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妥善保管纳税义务人提供的涉及商业秘密的资料，除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外，不得对外提供。纳税义务人可以书面向海关提出为其保守商业秘密的要求，并且具体列明需要保密的内容，但是不得以商业秘密为理由拒绝向海关提供有关资料。**第二章　进口货物的完税价格****第一节　进口货物完税价格确定方法**　　**第五条** 进口货物的完税价格，由海关以该货物的成交价格为基础审查确定，并且应当包括货物运抵中华人民共和国境内输入地点起卸前的运输及其相关费用、保险费。　　**第六条** 进口货物的成交价格不符合本章第二节规定的，或者成交价格不能确定的，海关经了解有关情况，并且与纳税义务人进行价格磋商后，依次以下列方法审查确定该货物的完税价格：　　（一）相同货物成交价格估价方法；　　（二）类似货物成交价格估价方法；　　（三）倒扣价格估价方法；　　（四）计算价格估价方法；　　（五）合理方法。纳税义务人向海关提供有关资料后，可以提出申请，颠倒前款第三项和第四项的适用次序。**第二节　成交价格估价方法**　　**第七条** 进口货物的成交价格，是指卖方向中华人民共和国境内销售该货物时买方为进口该货物向卖方实付、应付的，并且按照本章第三节的规定调整后的价款总额，包括直接支付的价款和间接支付的价款。　　**第八条** 进口货物的成交价格应当符合下列条件：　　（一）对买方处置或者使用进口货物不予限制，但是法律、行政法规规定实施的限制、对货物销售地域的限制和对货物价格无实质性影响的限制除外；　　（二）进口货物的价格不得受到使该货物成交价格无法确定的条件或者因素的影响；　　（三）卖方不得直接或者间接获得因买方销售、处置或者使用进口货物而产生的任何收益，或者虽然有收益但是能够按照本办法第十一条第一款第四项的规定做出调整；　　（四）买卖双方之间没有特殊关系，或者虽然有特殊关系但是按照本办法第十七条、第十八条的规定未对成交价格产生影响。　　**第九条** 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视为对买方处置或者使用进口货物进行了限制：　　（一）进口货物只能用于展示或者免费赠送的；　　（二）进口货物只能销售给指定第三方的；　　（三）进口货物加工为成品后只能销售给卖方或者指定第三方的；　　（四）其他经海关审查，认定买方对进口货物的处置或者使用受到限制的。　**第十条** 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视为进口货物的价格受到了使该货物成交价格无法确定的条件或者因素的影响：　　（一）进口货物的价格是以买方向卖方购买一定数量的其他货物为条件而确定的；　　（二）进口货物的价格是以买方向卖方销售其他货物为条件而确定的；（三）其他经海关审查，认定货物的价格受到使该货物成交价格无法确定的条件或者因素影响的。**第三节　成交价格的调整项目**　　**第十一条** 以成交价格为基础审查确定进口货物的完税价格时，未包括在该货物实付、应付价格中的下列费用或者价值应当计入完税价格：　　（一）由买方负担的下列费用：　　1．除购货佣金以外的佣金和经纪费；　　2．与该货物视为一体的容器费用；　　3．包装材料费用和包装劳务费用。　　（二）与进口货物的生产和向中华人民共和国境内销售有关的，由买方以免费或者以低于成本的方式提供，并且可以按适当比例分摊的下列货物或者服务的价值：　　1．进口货物包含的材料、部件、零件和类似货物；　　2．在生产进口货物过程中使用的工具、模具和类似货物；　　3．在生产进口货物过程中消耗的材料；　　4．在境外进行的为生产进口货物所需的工程设计、技术研发、工艺及制图等相关服务。　　（三）买方需向卖方或者有关方直接或者间接支付的特许权使用费，但是符合下列情形之一的除外：　　1．特许权使用费与该货物无关；　　2．特许权使用费的支付不构成该货物向中华人民共和国境内销售的条件。　　（四） 卖方直接或者间接从买方对该货物进口后销售、处置或者使用所得中获得的收益。　　纳税义务人应当向海关提供本条所述费用或者价值的客观量化数据资料。纳税义务人不能提供的，海关与纳税义务人进行价格磋商后，按照本办法第六条列明的方法审查确定完税价格。　**第十二条** 在根据本办法第十一条第一款第二项确定应当计入进口货物完税价格的货物价值时，应当按照下列方法计算有关费用：　　（一）由买方从与其无特殊关系的第三方购买的，应当计入的价值为购入价格；　　（二） 由买方自行生产或者从有特殊关系的第三方获得的，应当计入的价值为生产成本；　　（三）由买方租赁获得的，应当计入的价值为买方承担的租赁成本；　　（四）生产进口货物过程中使用的工具、模具和类似货物的价值，应当包括其工程设计、技术研发、工艺及制图等费用。　　如果货物在被提供给卖方前已经被买方使用过，应当计入的价值为根据国内公认的会计原则对其进行折旧后的价值。　　**第十三条** 符合下列条件之一的特许权使用费，应当视为与进口货物有关：　　（一）特许权使用费是用于支付专利权或者专有技术使用权，且进口货物属于下列情形之一的：　　1．含有专利或者专有技术的；　　2．用专利方法或者专有技术生产的；　　3．为实施专利或者专有技术而专门设计或者制造的。　 （二）特许权使用费是用于支付商标权，且进口货物属于下列情形之一的：　　1．附有商标的；　　2．进口后附上商标直接可以销售的；　　3．进口时已含有商标权，经过轻度加工后附上商标即可以销售的。　　（三）特许权使用费是用于支付著作权，且进口货物属于下列情形之一的：　　1．含有软件、文字、乐曲、图片、图像或者其他类似内容的进口货物，包括磁带、磁盘、光盘或者其他类似载体的形式；　　2．含有其他享有著作权内容的进口货物。　　（四）特许权使用费是用于支付分销权、销售权或者其他类似权利，且进口货物属于下列情形之一的：　　1．进口后可以直接销售的；　　2．经过轻度加工即可以销售的。　　**第十四条** 买方不支付特许权使用费则不能购得进口货物，或者买方不支付特许权使用费则该货物不能以合同议定的条件成交的，应当视为特许权使用费的支付构成进口货物向中华人民共和国境内销售的条件。　　**第十五条** 进口货物的价款中单独列明的下列税收、费用，不计入该货物的完税价格：　　（一）厂房、机械或者设备等货物进口后发生的建设、安装、装配、维修或者技术援助费用，但是保修费用除外；　　（二）进口货物运抵中华人民共和国境内输入地点起卸后发生的运输及其相关费用、保险费；　　（三）进口关税、进口环节海关代征税及其他国内税；　　（四）为在境内复制进口货物而支付的费用；　　（五）境内外技术培训及境外考察费用。　　同时符合下列条件的利息费用不计入完税价格：　　（一）利息费用是买方为购买进口货物而融资所产生的；　　（二）有书面的融资协议的；　　（三）利息费用单独列明的；（四）纳税义务人可以证明有关利率不高于在融资当时当地此类交易通常应当具有的利率水平，且没有融资安排的相同或者类似进口货物的价格与进口货物的实付、应付价格非常接近的。**第四节　特殊关系**　　**第十六条** 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认为买卖双方存在特殊关系：　　（一）买卖双方为同一家族成员的；　　（二）买卖双方互为商业上的高级职员或者董事的；　　（三）一方直接或者间接地受另一方控制的；　　（四）买卖双方都直接或者间接地受第三方控制的；　　（五）买卖双方共同直接或者间接地控制第三方的；　　（六）一方直接或者间接地拥有、控制或者持有对方5%以上（含5%）公开发行的有表决权的股票或者股份的；　　（七）一方是另一方的雇员、高级职员或者董事的；　　（八）买卖双方是同一合伙的成员的。　　买卖双方在经营上相互有联系，一方是另一方的独家代理、独家经销或者独家受让人，如果符合前款的规定，也应当视为存在特殊关系。　　**第十七条** 买卖双方之间存在特殊关系，但是纳税义务人能证明其成交价格与同时或者大约同时发生的下列任何一款价格相近的，应当视为特殊关系未对进口货物的成交价格产生影响：　　（一）向境内无特殊关系的买方出售的相同或者类似进口货物的成交价格；　　（二）按照本办法第二十三条的规定所确定的相同或者类似进口货物的完税价格；　　（三）按照本办法第二十五条的规定所确定的相同或者类似进口货物的完税价格。　　海关在使用上述价格进行比较时，应当考虑商业水平和进口数量的不同，以及买卖双方有无特殊关系造成的费用差异。第十八条 海关经对与货物销售有关的情况进行审查，认为符合一般商业惯例的，可以确定特殊关系未对进口货物的成交价格产生影响。**第五节　除成交价格估价方法以外的其他估价方法**　　**第十九条** 相同货物成交价格估价方法，是指海关以与进口货物同时或者大约同时向中华人民共和国境内销售的相同货物的成交价格为基础，审查确定进口货物的完税价格的估价方法。　　**第二十条** 类似货物成交价格估价方法，是指海关以与进口货物同时或者大约同时向中华人民共和国境内销售的类似货物的成交价格为基础，审查确定进口货物的完税价格的估价方法。　　**第二十一条** 按照相同或者类似货物成交价格估价方法的规定审查确定进口货物的完税价格时，应当使用与该货物具有相同商业水平且进口数量基本一致的相同或者类似货物的成交价格。使用上述价格时，应当以客观量化的数据资料，对该货物与相同或者类似货物之间由于运输距离和运输方式不同而在成本和其他费用方面产生的差异进行调整。　　在没有前款所述的相同或者类似货物的成交价格的情况下，可以使用不同商业水平或者不同进口数量的相同或者类似货物的成交价格。使用上述价格时，应当以客观量化的数据资料，对因商业水平、进口数量、运输距离和运输方式不同而在价格、成本和其他费用方面产生的差异做出调整。　**第二十二条** 按照相同或者类似货物成交价格估价方法审查确定进口货物的完税价格时，应当首先使用同一生产商生产的相同或者类似货物的成交价格。　　没有同一生产商生产的相同或者类似货物的成交价格的，可以使用同一生产国或者地区其他生产商生产的相同或者类似货物的成交价格。　　如果有多个相同或者类似货物的成交价格，应当以最低的成交价格为基础审查确定进口货物的完税价格。　　**第二十三条** 倒扣价格估价方法，是指海关以进口货物、相同或者类似进口货物在境内的销售价格为基础，扣除境内发生的有关费用后，审查确定进口货物完税价格的估价方法。该销售价格应当同时符合下列条件：　　（一）是在该货物进口的同时或者大约同时，将该货物、相同或者类似进口货物在境内销售的价格；　　（二）是按照货物进口时的状态销售的价格；　　（三）是在境内第一销售环节销售的价格；　　（四）是向境内无特殊关系方销售的价格；　　（五）按照该价格销售的货物合计销售总量最大。　　**第二十四条** 按照倒扣价格估价方法审查确定进口货物完税价格的，下列各项应当扣除：　　（一）同等级或者同种类货物在境内第一销售环节销售时，通常的利润和一般费用（包括直接费用和间接费用）以及通常支付的佣金；　　（二）货物运抵境内输入地点起卸后的运输及其相关费用、保险费；　　（三）进口关税、进口环节海关代征税及其他国内税。　　如果该货物、相同或者类似货物没有按照进口时的状态在境内销售，应纳税义务人要求，可以在符合本办法第二十三条规定的其他条件的情形下，使用经进一步加工后的货物的销售价格审查确定完税价格，但是应当同时扣除加工增值额。　　前款所述的加工增值额应当依据与加工成本有关的客观量化数据资料、该行业公认的标准、计算方法及其他的行业惯例计算。　　按照本条的规定确定扣除的项目时，应当使用与国内公认的会计原则相一致的原则和方法。　**第二十五条** 计算价格估价方法，是指海关以下列各项的总和为基础，审查确定进口货物完税价格的估价方法：　　（一）生产该货物所使用的料件成本和加工费用；　　（二）向境内销售同等级或者同种类货物通常的利润和一般费用（包括直接费用和间接费用）；　　（三）该货物运抵境内输入地点起卸前的运输及相关费用、保险费。　　按照前款的规定审查确定进口货物的完税价格时，海关在征得境外生产商同意并且提前通知有关国家或者地区政府后，可以在境外核实该企业提供的有关资料。　　按照本条第一款的规定确定有关价值或者费用时，应当使用与生产国或者地区公认的会计原则相一致的原则和方法。　　**第二十六条** 合理方法，是指当海关不能根据成交价格估价方法、相同货物成交价格估价方法、类似货物成交价格估价方法、倒扣价格估价方法和计算价格估价方法确定完税价格时，海关根据本办法第二条规定的原则，以客观量化的数据资料为基础审查确定进口货物完税价格的估价方法。　　**第二十七条** 海关在采用合理方法确定进口货物的完税价格时，不得使用以下价格：　　（一）境内生产的货物在境内的销售价格；　　（二）可供选择的价格中较高的价格；　　（三）货物在出口地市场的销售价格；　　（四）以本办法第二十五条规定之外的价值或者费用计算的相同或者类似货物的价格；　　（五）出口到第三国或者地区的货物的销售价格；（六）最低限价或者武断、虚构的价格。**第三章　特殊进口货物的完税价格**　　**第二十八条** 运往境外修理的机械器具、运输工具或者其他货物，出境时已向海关报明，并且在海关规定的期限内复运进境的，应当以境外修理费和料件费为基础审查确定完税价格。　　出境修理货物复运进境超过海关规定期限的，由海关按照本办法第二章的规定审查确定完税价格。　　**第二十九条** 运往境外加工的货物，出境时已向海关报明，并且在海关规定期限内复运进境的，应当以境外加工费和料件费以及该货物复运进境的运输及其相关费用、保险费为基础审查确定完税价格。　　出境加工货物复运进境超过海关规定期限的，由海关按照本办法第二章的规定审查确定完税价格。　**第三十条** 经海关批准的暂时进境货物，应当缴纳税款的，由海关按照本办法第二章的规定审查确定完税价格。经海关批准留购的暂时进境货物，以海关审查确定的留购价格作为完税价格。　**第三十一条** 租赁方式进口的货物，按照下列方法审查确定完税价格：　　（一）以租金方式对外支付的租赁货物，在租赁期间以海关审查确定的租金作为完税价格，利息应当予以计入；　　（二）留购的租赁货物以海关审查确定的留购价格作为完税价格；　　（三）纳税义务人申请一次性缴纳税款的，可以选择申请按照本办法第六条列明的方法确定完税价格，或者按照海关审查确定的租金总额作为完税价格。　　**第三十二条** 减税或者免税进口的货物应当补税时，应当以海关审查确定的该货物原进口时的价格，扣除折旧部分价值作为完税价格，其计算公式如下：海关审查确定的补税时实际已进口的时间（月）完税价格　＝　该货物原进口时　×（1 ）的价格监管年限×12　　 上述计算公式中“补税时实际已进口的时间”按月计算，不足1个月但是超过15日的，按照1个月计算；不超过15日的，不予计算。 　　**第三十三条** 易货贸易、寄售、捐赠、赠送等不存在成交价格的进口货物，海关与纳税义务人进行价格磋商后，按照本办法第六条列明的方法审查确定完税价格。　　**第三十四条** 进口载有专供数据处理设备用软件的介质，具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以介质本身的价值或者成本为基础审查确定完税价格：　　（一）介质本身的价值或者成本与所载软件的价值分列；　　（二）介质本身的价值或者成本与所载软件的价值虽未分列，但是纳税义务人能够提供介质本身的价值或者成本的证明文件，或者能提供所载软件价值的证明文件。含有美术、摄影、声音、图像、影视、游戏、电子出版物的介质不适用前款规定。**第四章　进口货物完税价格中的运输及其相关费用、保险费的计算**　**第三十五条** 进口货物的运输及其相关费用，应当按照由买方实际支付或者应当支付的费用计算。如果进口货物的运输及其相关费用无法确定的，海关应当按照该货物进口同期的正常运输成本审查确定。　　运输工具作为进口货物，利用自身动力进境的，海关在审查确定完税价格时，不再另行计入运输及其相关费用。　**第三十六条** 进口货物的保险费，应当按照实际支付的费用计算。如果进口货物的保险费无法确定或者未实际发生，海关应当按照“货价加运费”两者总额的3‰计算保险费，其计算公式如下：保险费=（货价+运费）×3‰**第三十七条** 邮运进口的货物，应当以邮费作为运输及其相关费用、保险费。**第五章　出口货物的完税价格**　　**第三十八条** 出口货物的完税价格由海关以该货物的成交价格为基础审查确定，并且应当包括货物运至中华人民共和国境内输出地点装载前的运输及其相关费用、保险费。　　**第三十九条** 出口货物的成交价格，是指该货物出口销售时，卖方为出口该货物应当向买方直接收取和间接收取的价款总额。　　**第四十条** 下列税收、费用不计入出口货物的完税价格：　　（一）出口关税；　　（二）在货物价款中单独列明的货物运至中华人民共和国境内输出地点装载后的运输及其相关费用、保险费。　　**第四十一条** 出口货物的成交价格不能确定的，海关经了解有关情况，并且与纳税义务人进行价格磋商后，依次以下列价格审查确定该货物的完税价格：　　（一）同时或者大约同时向同一国家或者地区出口的相同货物的成交价格；　　（二）同时或者大约同时向同一国家或者地区出口的类似货物的成交价格；　　（三）根据境内生产相同或者类似货物的成本、利润和一般费用（包括直接费用和间接费用）、境内发生的运输及其相关费用、保险费计算所得的价格；（四）按照合理方法估定的价格。**第六章　完税价格的审查确定**　　**第四十二条** 纳税义务人向海关申报时，应当按照本办法的有关规定，如实向海关提供发票、合同、提单、装箱清单等单证。根据海关要求，纳税义务人还应当如实提供与货物买卖有关的支付凭证以及证明申报价格真实、准确的其他商业单证、书面资料和电子数据。货物买卖中发生本办法第二章第三节所列的价格调整项目的，或者发生本办法三十五条所列的运输及其相关费用的，纳税义务人应当如实向海关申报。　　前款规定的价格调整项目或者运输及其相关费用如果需要分摊计算的，纳税义务人应当根据客观量化的标准进行分摊，并且同时向海关提供分摊的依据。　　**第四十三条** 海关为审查申报价格的真实性、准确性，可以行使下列职权进行价格核查：　　（一）查阅、复制与进出口货物有关的合同、发票、账册、结付汇凭证、单据、业务函电、录音录像制品和其他反映买卖双方关系及交易活动的商业单证、书面资料和电子数据；　　（二）向进出口货物的纳税义务人及与其有资金往来或者有其他业务往来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调查与进出口货物价格有关的问题；　　（三）对进出口货物进行查验或者提取货样进行检验或者化验；　　（四）进入纳税义务人的生产经营场所、货物存放场所，检查与进出口活动有关的货物和生产经营情况；　　（五）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凭《中华人民共和国海关账户查询通知书》（见附件1）及有关海关工作人员的工作证件，可以查询纳税义务人在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开立的单位账户的资金往来情况，并且向银行业监督管理机构通报有关情况；　　（六）向税务部门查询了解与进出口货物有关的缴纳国内税情况。　　海关在行使前款规定的各项职权时，纳税义务人及有关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应当如实反映情况，提供有关书面资料和电子数据，不得拒绝、拖延和隐瞒。　　**第四十四条** 海关对申报价格的真实性、准确性有疑问时，或者认为买卖双方之间的特殊关系影响成交价格时，应当制发《中华人民共和国海关价格质疑通知书》（以下简称《价格质疑通知书》，见附件2），将质疑的理由书面告知纳税义务人或者其代理人，纳税义务人或者其代理人应当自收到《价格质疑通知书》之日起5个工作日内，以书面形式提供相关资料或者其他证据，证明其申报价格真实、准确或者双方之间的特殊关系未影响成交价格。　　纳税义务人或者其代理人确有正当理由无法在规定时间内提供前款资料的，可以在规定期限届满前以书面形式向海关申请延期。　　除特殊情况外，延期不得超过10个工作日。　　**第四十五条** 海关制发《价格质疑通知书》后，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与纳税义务人进行价格磋商后，按照本办法第六条或者第四十一条列明的方法审查确定进出口货物的完税价格：　　（一）纳税义务人或者其代理人在海关规定期限内，未能提供进一步说明的；　　（二）纳税义务人或者其代理人提供有关资料、证据后，海关经审核其所提供的资料、证据，仍然有理由怀疑申报价格的真实性、准确性的；　　（三）纳税义务人或者其代理人提供有关资料、证据后，海关经审核其所提供的资料、证据，仍然有理由认为买卖双方之间的特殊关系影响成交价格的。　　**第四十六条** 海关经过审查认为进口货物无成交价格的，可以不进行价格质疑，经与纳税义务人进行价格磋商后，按照本办法第六条列明的方法审查确定完税价格。　　海关经过审查认为出口货物无成交价格的，可以不进行价格质疑，经与纳税义务人进行价格磋商后，按照本办法第四十一条列明的方法审查确定完税价格。　**第四十七条** 按照本办法规定需要价格磋商的，海关应当依法向纳税义务人制发《中华人民共和国海关价格磋商通知书》（见附件3）。纳税义务人应当自收到通知之日起5个工作日内与海关进行价格磋商。纳税义务人在海关规定期限内与海关进行价格磋商的，海关应当制作《中华人民共和国海关价格磋商纪录表》（见附件4）。　　纳税义务人未在通知规定的时限内与海关进行磋商的，视为其放弃价格磋商的权利，海关可以直接使用本办法第六条或者第四十一条列明的方法审查确定进出口货物的完税价格。　　**第四十八条** 对符合下列情形之一的，经纳税义务人书面申请，海关可以不进行价格质疑以及价格磋商，按照本办法第六条或者第四十一条列明的方法审查确定进出口货物的完税价格：　　（一）同一合同项下分批进出口的货物，海关对其中一批货物已经实施估价的；　　（二）进出口货物的完税价格在人民币10万元以下或者关税及进口环节海关代征税总额在人民币2万元以下的；　　（三）进出口货物属于危险品、鲜活品、易腐品、易失效品、废品、旧品等的。　 **第四十九条** 海关审查确定进出口货物的完税价格期间，纳税义务人可以在依法向海关提供担保后，先行提取货物。**第五十条** 海关审查确定进出口货物的完税价格后，纳税义务人可以提出书面申请，要求海关就如何确定其进出口货物的完税价格做出书面说明。海关应当根据要求出具《中华人民共和国海关估价告知书》（见附件5）。**第七章　附　则**　　**第五十一条** 本办法中下列用语的含义：　　境内，是指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境内。　　完税价格，是指海关在计征关税时使用的计税价格。　　买方，是指通过履行付款义务，购入货物，并且为此承担风险，享有收益的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其中进口货物的买方是指向中华人民共和国境内购入进口货物的买方。　　卖方，是指销售货物的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其中进口货物的卖方是指向中华人民共和国境内销售进口货物的卖方。　　向中华人民共和国境内销售，是指将进口货物实际运入中华人民共和国境内，货物的所有权和风险由卖方转移给买方，买方为此向卖方支付价款的行为。　　实付、应付价格，是指买方为购买进口货物而直接或者间接支付的价款总额，即作为卖方销售进口货物的条件，由买方向卖方或者为履行卖方义务向第三方已经支付或者将要支付的全部款项。　　间接支付，是指买方根据卖方的要求，将货款全部或者部分支付给第三方，或者冲抵买卖双方之间的其他资金往来的付款方式。　　购货佣金，是指买方为购买进口货物向自己的采购代理人支付的劳务费用。　　经纪费，是指买方为购买进口货物向代表买卖双方利益的经纪人支付的劳务费用。　　相同货物，是指与进口货物在同一国家或者地区生产的，在物理性质、质量和信誉等所有方面都相同的货物，但是表面的微小差异允许存在。　　类似货物，是指与进口货物在同一国家或者地区生产的，虽然不是在所有方面都相同，但是却具有相似的特征，相似的组成材料，相同的功能，并且在商业中可以互换的货物。　　大约同时，是指海关接受货物申报之日的大约同时，最长不应当超过前后45日。按照倒扣价格法审查确定进口货物的完税价格时，如果进口货物、相同或者类似货物没有在海关接受进口货物申报之日前后45日内在境内销售，可以将在境内销售的时间延长至接受货物申报之日前后90日内。 　　公认的会计原则，是指在有关国家或者地区会计核算工作中普遍遵循的原则性规范和会计核算业务的处理方法。包括对货物价值认定有关的权责发生制原则、配比原则、历史成本原则、划分收益性与资本性支出原则等。　　特许权使用费，是指进口货物的买方为取得知识产权权利人及权利人有效授权人关于专利权、商标权、专有技术、著作权、分销权或者销售权的许可或者转让而支付的费用。　　技术培训费用，是指基于卖方或者与卖方有关的第三方对买方派出的技术人员进行与进口货物有关的技术指导，进口货物的买方支付的培训师资及人员的教学、食宿、交通、医疗保险等其他费用。　　软件，是指《计算机软件保护条例》规定的用于数据处理设备的程序和文档。　　专有技术，是指以图纸、模型、技术资料和规范等形式体现的尚未公开的工艺流程、配方、产品设计、质量控制、检测以及营销管理等方面的知识、经验、方法和诀窍等。　　轻度加工，是指稀释、混合、分类、简单装配、再包装或者其他类似加工。　　同等级或者同种类货物，是指由特定产业或者产业部门生产的一组或者一系列货物中的货物，包括相同货物或者类似货物。　　介质，是指磁带、磁盘、光盘。　　价格核查，是指海关为确定进出口货物的完税价格，依法行使本办法第四十三条规定的职权，通过审查单证、核实数据、核对实物及相关账册等方法，对进出口货物申报成交价格的真实性、准确性以及买卖双方之间是否存在特殊关系影响成交价格进行的审查。　　价格磋商，是指海关在使用除成交价格以外的估价方法时，在保守商业秘密的基础上，与纳税义务人交换彼此掌握的用于确定完税价格的数据资料的行为。 　　起卸前，是指货物起卸行为开始之前。　　装载前，是指货物装载行为开始之前。　　**第五十二条** 纳税义务人对海关确定完税价格有异议的，应当按照海关作出的相关行政决定依法缴纳税款，并且可以依法向上一级海关申请复议。对复议决定不服的，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第五十三条** 违反本办法规定，构成走私行为、违反海关监管规定行为或者其他违反《海关法》行为的，由海关依照《海关法》和《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的有关规定予以处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十四条** 本办法由海关总署负责解释。**第五十五条** 本办法自2014年2月1日起施行。2006年3月28日海关总署令第148号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审定进出口货物完税价格办法》同时废止。 |